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9월 12일, 허은아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3년 9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3.

12. 5.) 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토론·소위원회부

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3.

12. 6.) 상정·축조심사·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3.

12. 8.) 상정·소위심사보고·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허은아의원)

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, 약칭 「단말기유통법」이 시행 중임.

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, 수출 시 분실·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,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 정보 유출 불안감,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·활성화, 이용자 신뢰 제고,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건오)

- 2019년 기준 약 6,500억원에 해당하였던 국내 중고 휴대폰 유통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는 약 7,700억원 규모(18.4% 증가)로 나타나는 등 통신기기 가격 부담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국내 중고폰 시장

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.

- 그런데 중고 휴대폰 시장의 상당 비중이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하는 만큼, 분실폰·고장폰 등 불법·사기 중고폰 판매 문제와 가짜 부품 사용과 같은 품질 보증 문제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.
- 이에 개정안은 정부에서 인증한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, 중고 휴대폰 시장을 보다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조승래)

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